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

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신청인 | 법인 또는 기관명 |          |
|     | 대표자(성명)   | 생년월일(성별) |
|     | 주소        | 전화번호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점용·사용허가 번호(협의·승인 연월일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소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목적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총사업비                  |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준공내용                  | 점용·사용시설 면적 m <sup>2</sup>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공유수면 점용·사용면적 m <sup>2</sup> |
| 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| 년 월 일 ~ 년 월 일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 |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확인을 합니다.

년 월 일

(공유수면관리청)

직인

※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·주소·생년월일(성별)을 적어야 합니다.

※ 이 별지에서 "공유수면관리청"이란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.